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4. 12 선고 2015가단5335133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

피고1. A 주식회사

2. B

3. C

4. 주식회사 엔씨아이엔

변론 종결2016. 3. 8. (피고 A 주식회사, B, C에 대하여)

2016. 3. 22. (피고 주식회사 엔씨아이엔에 대하여)

판결 선고2016. 4. 12.

주 문

1. 피고 A 주식회사, B,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9,373,796원 및 이 중 48,980,346원에 대하여 2015. 10. 7.부터 2015. 10. 20.까지는 연 12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가. 피고 주식회사 엔씨아이엔과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. 11. 11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.
나. 피고 주식회사 엔씨아이엔은 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4. 11. 13. 접수 제16062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공통되는 사실

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갑 제1호증의 1, 2, 갑 제2호증, 갑 제3호증, 갑 제4호증의 1 내지 8, 갑 제5호증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.

가. 원고는 2006. 11. 18. 피고 A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신용보증원금을 48,000,000원, 신용보증기간을 2006. 11. 28.부터 2007. 11. 28.까지로(이후 8회에 걸쳐 변경되어 최종적으로는 2015. 11. 20.까지로 연장되었다) 하여 피고 A 주식회사의 대출금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고, 원고가 이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된 경우 피고 A 주식회사로부터 그 변제 금액과 원고가 법령에 근거하여 정한 율(2012. 12. 1. 이후 연 12%)에 의한 손해금 그리고 보증채무의 이행에 소요된 비용 및 원고가 보증채무의 이행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상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, 같은 날 피고 B, C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피고 A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.

나.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을 그 상대방으로 하는 보증금액 48,000,000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가 위 은행에 부담하게 될 대출예정금액 60,000,000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금 채무를 보증하였고, 피고 A 주식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2006. 11. 30.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60,000,000원을 대출받았다.

다. 피고 A 주식회사는 위 대출금의 상환 시기를 계속 연장하여 오던 중 결국 그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채 2015. 7. 22.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에 이르렀고, 이에 원고는 위 회사를 대위하여 2015. 10. 7. 중소기업은행에 48,980,346원(= 원금 48,000,000원 + 이자 980,346원)을 변제하였고, 그

과정에서 채권의 보전을 위한 절차 비용으로 480,240원을 지출하여 그 중 86,790원을 회수하였다.

2.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, B,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, 피고 A 주식회사, B,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9,373,796원(= 48,980,346원 + 480,240원 - 86,790원) 및 이 중 원고의 대위변제금 48,980,346원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인 2015. 10. 7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들에게 모두 송달된 2015. 10. 20.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2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하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엔씨아이엔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의 성립 경위는 앞서 본 바와 같고, 위 B이 이미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(채권최고액 60,000,000원)가 마쳐진 시가 34,038,000원 상당의 진주시 D 전 1,098㎡ 및 각 그 근저당권자를 중소기업은행으로 한 3건(채권최고액 합계 318,000,000원)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시가 370,000,000원 상당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고 한다)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이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와 앞서 본 원고에 대한 채무 외에도 다른 금융기관에 합계 90,000,000원 이상의 채무를 따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, 피고 주식회사 엔씨아이엔(이하 '피고 회사'라 한다)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00,000,000원, 채무자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, 그 근저당권자를 피고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4. 11. 13. 접수 제160629호로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'라 한다)를 마치기에 이른 사실은 갑 제11호증 내지 15호증, 갑 제19호증 내지 24호증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.

이에 의하면, B이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재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행위로서 그러한 일반 채권자 중의 하나인 원고(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 발생한 것임을 필요로 하지만, 사해행위 당시 이미 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

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이후 가까운 장래에 그러한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, 비록 사해행위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던 채권이라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것인바, 앞서 본 바와 같이 A 주식회사가 원고의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2006. 11. 30.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60,000,000원을 대출받은 후 그 대출금의 상환 시기를 계속 연기하여, 이에 따라 원고의 신용보증기간 또한 8회에 걸쳐 2015. 11. 20.까지로 연장된 상황에서, 결국 그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채 2015. 7. 22.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에 이른 점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B의 재산 내역, 피고 회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2013년부터 B이 그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와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2014년에 들어와 위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미수금이 2억 원을 넘어서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)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, B은 이로써 원고 등 자신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, 채무자인 B에게 위와 같은 사해의 의사가 인정되는 이상, 수익자인 피고 회사의 악의는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,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,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, 자신이 2013년부터 위 B이 그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와 거래를 시작한 이래 거래 관행에 따라 위 회사에 대하여 계속하여 담보의 제공을 요청하여 오던 중, 2014년에 들어와 위 주식회사 E로부터 받아야 할 미수금 채권이 2억 원을 넘어서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, 이에 B을 재촉하여 늦게나마 그 개인 소유의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것이라 주장하며,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다투나,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제반의 사정들과 함께 피고 회사와 주식회사 E와의 거래 내역(을 제2호증 참조)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진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을 제1호증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 위 B에게 다른 일반 채권자들이 존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설정에 의하여 그들을 해하게 될 수도 있다는

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항변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.

4. 결론

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제갈창

별지